

의안번호	2213397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5.11.25.
추계번호	25D540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와 인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원 등 향후 5년간 5억원(연평균 1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평균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안 제7조의2)	60	60	60	60	60	300	60
인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안 제7조의8)	40	40	40	40	40	200	4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500	100

주: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조정)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역할을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조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조정으로 확대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범위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로 확대함	의무규정
3	안 제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범위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로 확대함	의무규정
4	안 제7조의2(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5	안 제7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6	안 제7조의6(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함	의무규정
7	안 제7조의7(분과위원회)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공 인공지능 윤리·제도 분과위원회, 공공 인공지능 인프라 분과위원회, 공공서비스 혁신 분과위원회, 공공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분과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8	안 제7조의8(인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	위원회는 인공지능정부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 자문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하여 산업계·학계 등의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을 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화 대상을 데이터기반행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확대함	의무규정
10	안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성요소에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습용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동 플랫폼에 제공·연계될 수 있도록 함	의무규정
11	안 제19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까지 범위를 확대함	의무규정
12	안 제20조(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	기존 데이터분석센터를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로 변경하고 수행업무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확대함	의무규정
13	안 제21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로 확대함	의무규정
14	안 제22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기존 실태 점검 및 평가 범위를 데이터기반행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확대함	의무규정

15	안 제23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등)	기존 우수사례 포상 및 홍보 대상을 데이터기반행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확대함	의무규정
16	안 제24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존 전문인력 양성 대상을 데이터 관련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으로 확대함	의무규정
17	안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기존 민간 및 국제 협력 사업의 범위를 데이터기반행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확대함	의무규정
18	안 제26조(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27조(공통 기반의 구축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복투자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단계를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20	안 제28조(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적 지식 함양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21	안 제33조(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	------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1	안 제5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조정)	—	미대상: -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으로 초거대 AI를 도입하여 각 기관이 특화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히 구현·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거대 AI 학습용 데이터 공유·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5년 53억 9,200만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출연금)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 중임 [참고자료]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주요 내용												
2	안 제6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													
3	안 제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													
4	안 제1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	- 또한 현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25년 기준 150억 800만원의 예산(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2046-503))을 편성하여 운영 중임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예산(2046-503)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분</th><th>2025년 예산</th></tr><tr><td>공공빅데이터 분석·활용</td><td>5796</td></tr><tr><td>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td><td>7,482</td></tr><tr><td>데이터기반행정 역량지원</td><td>1,479</td></tr><tr><td>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제도 운영</td><td>251</td></tr><tr><td>총 계</td><td>15,008</td></tr></table>	구분	2025년 예산	공공빅데이터 분석·활용	5796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7,482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지원	1,47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제도 운영	251	총 계	15,008
구분	2025년 예산														
공공빅데이터 분석·활용	5796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7,482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지원	1,47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제도 운영	251														
총 계	15,008														
5	안 제18조(데이터통합 관리 플랫폼)	—													
6	안 제19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													
7	안 제20조(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	—													
8	안 제21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													
9	안 제22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													
10	안 제23조(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등)	—													
11	안 제24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													
12	안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													
13	안 제27조(공통기반의 구축 등)	—													
14	안 제26조(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운영 방향 및 지원 사항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15	안 제28조(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현행법에서 교육 실시 주체인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¹⁾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각급 학교가 모두 포함되는 범위로 정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별 공공기관의 교육 실시 여부, 위탁 방법, 사업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16	안 제33조(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현행법에서 영향평가 실시 주체인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각급 학교가 모두 포함되는 범위로 정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별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영향평가 실시 여부, 방법,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행정안전부는 ‘공공AI 영향평가제도 추진방향과 영향평가 세부설계 및 제도화방안 연구용역’(~2026년1월) 이후 법제화 과정을 거쳐 단계별 시행을 계획 중임
17	안 제7조의2(인공지능 정부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8	안 제7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	
19	안 제7조의6(회의)	○	
20	안 제7조의7(분과위원회)	○	
21	안 제7조의8(인공지능 정부민관협력포럼)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안 제7조의8에 따른 인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 운영비용은 행정안전부의 유사 사업인 ‘공공데이터 민·관협력포럼’ 운영비용을 준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 운영

- 안 제7조의2는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정하고 있음
 - 민간위원 수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인 20명으로 가정
 -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각 분기별 1회(연 4회), 분기별 2회(연 8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7조의6에서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
 - 안 제7조의7에서 분과위원회는 공공 인공지능 윤라제도 분과위원회, 공공 인공지능 인프라 분과위원회, 공공서비스 혁신 분과위원회, 공공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분과위원회의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회의참석수당은 1인당 25만원으로 추계기간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동안 연간 6,000만원으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표 3]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인공지능정부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 수 (a)	20	20	20	20	20	-
	회의개최횟수 (b)	12	12	12	12	12	-
	회의참석수당 (c)	0.25	0.25	0.25	0.25	0.25	-
	추가재정소요 (a×b×c)	60	60	60	60	60	300

나. 인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

- 안 제7조의8에서는 인공지능정부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 자문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하여 산업계·학계 등의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포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포럼의 구성, 규모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행정안전부의 유사사업인 ‘공공데이터 민관협력포럼’ 운영비용을 준용
 - 동 사업은 시민주도형 민·관협업 ‘오픈데이터포럼’ 운영 지원예산으로 포럼 운영, 세미나, 성과공유회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4,000만원 편성
- 추계 결과, 인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 기간동안 연간 4,000만원으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표 3] 인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인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 운영	40	40	40	40	40	2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와 인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5억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	60	60	60	60	60	300
인공지능정부민관협력포럼	40	40	40	40	40	20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5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